

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개정(안)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7조(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) ① 공 고등록과 함께 과제에 참여할 연구책임자는 사전등록을 통해 참여의사를 밝혀야 한다. ②~⑦ (생략)	제17조(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) <삭제> ①~⑥ (현행 ②~⑦과 같음)
제47조(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) ①~④ (생략) ⑤ 전문기관의 장은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4. 연구수당 차등 지급(80점 이상 : 인건비의 20% 이내, 80점 미만 70점 이상 : 인건비의 15%이내, 70점 미만 60점 이상 : 인건비의 10% 이내, 60점 미만 : 0%) 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 및 연구단 세부과제의 평가순위에 따라 단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. ~ 3. (생략) 4. 연구수당 차등 지급(80점 이상 : 인건비의 20% 이내, 80점 미만 70점 이상 : 인건비의 15%이내, 70점 미만 60점 이상 : 인건비의 10% 이내, 60점 미만 : 0%) ⑦ (생략)	제47조(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(70점 이상 : 인건비의 20% 이내, ----- ----- -----) ⑥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(70점 이상 : 인건비의 20% 이내, ----- ----- -----) ⑦ (현행과 같음)
제52조(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) ①~④ (생략) 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. 1. 80점 이상 : 인건비의 20% 이내 2. 80점 미만 70점 이상 : 인건비의 15%이내 3. (생략) 4. (생략) ⑥ (생략)	제52조(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. 1. 70점 이상 : 인건비의 20% 이내 <삭제> 2. (현행 제3호와 같음) 3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